프랜차이즈 관행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최 성 근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프랜차이즈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현행법규로는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등이 있는데, 공정거래법은 폐해규제를 원칙으로 하여 사업자의 일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프랜차이즈 관계를 규율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약관규제법은 계약체결시 당사자가 서로 타협하여 수정한 개별약정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행법규에 관련규정을 삽입하는 방식보다는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거래를 총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본다.

I. 프랜차이즈의 이용증가 추세와 노정된 문제점

프랜차이즈(가맹사업)란 가맹본부(가맹사업자)가 다수의 가맹점주(가맹계약자)에게 자기의 상표·상호·서비스표·휘장 등을 사용하여 자기와 동일한 이미지로 상품판매, 용역제공 등 일정한 영업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영업의 지원 및 통제를 하며, 가맹점주는 가맹본부로부터 부여받은 권리 및 영업상 지원의 대가로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계속적 거래관계를 말한다.[1] 프랜차이즈는 1970년대 말엽 우리 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1980년대 중반 이후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해왔고, 현재는 식음료·의류 기타 생활용품의 제조·판매와 일반서비스는 물론 교육·법률서비스·의료 등 전문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미치지 아니하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널리 확산되어 있다. 관련통계를 보면, 프랜차이즈는 1999년 말 현재 가맹본부 1,500여개, 가맹점 12만여개, 상시종업원 60여만명 그리고 국내시장규모 약 45조원(외식업 24조원·서비스업 12조원·기타 소매업 등 9조원)에 이르고 있다.[2] 프랜차이즈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프랜차이즈 거래구조가 지닌 장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먼저 가맹본부의 입장에서 볼 때, 시장개척 및 점유율

1)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의불공정거래행위의기준」(1997. 2. 고시 1998-19) 제2조.
2) 공정거래위원회 「2001년 주요업무계획」, 2001. 2. 29. 필자가 1994년에 프랜차이즈의 실태와 관행을 조사하면서 관련자료에 기초하여 분포업종과 가맹점의 수를 추산해 본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30여개 업종에 걸쳐 1만 5,000여개의 가맹점이 있는 정도였

확대를 위한 노력과 비용 및 위험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고, 가맹점주로부터 투하자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액인 가입비 · 보증금 · 로얄티 또는 상품대금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가맹점주의 입장에서는, 판매기타 영업에 관한 충분한 지식 ·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도 가맹본부에 의하여 이미 조성되어 있는 상호 · 상표의 지명도 또는 축적된 노하우 등을 이용함과 아울러 가맹본부로부터 지도 내지 지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의 개시가 용이하고 안정된 영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가맹본부에 의하여 연구 · 개발되고 표준화된 시스템을 통하여 가맹점으로부터 균등한 품질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와 같은 프랜차이즈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그 도입 이래로 현재까지 놀라운 급증세를 보이고 있고, 또 최근 경기악화로 인하여 촉발된 소자본에 의한 창업열기는 이러한 추세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도 프랜차이즈를 적정하게 규율할 만한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가맹점주의 피해사례 내지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분쟁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프랜차이즈는 형식적으로는 독립적인 상인간의 계약관계이다. 그러나 그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결코 독립적인 상인간의 계약관계라고 말할 수 없다. 프랜차이즈 계약은 통상 약관에 의하여 성립하는데 약관은 거의 예외 없이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작성되고, 가맹점주는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 즉, 계약내용에 대하여 승락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을 뿐이다. 물론 약관에 의한 계약의 체결은 대량적 · 집단적인 거래활동을 간이 ·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경제적 기능과 적용법규의 불비를 보충하고 무용한 소송을 방지하는 법적 기능을 가지며, 아울러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거래형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가맹점주에 대한 통일성 및 공평성의 확보에 기여한다. 그러나 약관에 의한 일방적인 계약내용의 결정은 프랜차이즈 관계에 내재되어 있는 당사자 지위의 불평등성을 더욱 심화시켜 계약 본래의 기능인 자기결정성과 자기책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1997년 2월에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의불공정거래행위의기준」고시를 제정한 데 이어 2001년 2월에 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 한국프랜차이즈경제인협회의 청구를 심사 · 승인하는 형식으로「프랜차이즈(외식업)표준약관」을 도입한 것은, 물론 적용범위가 외식업에 국한되어 있고 표준약관이라는 특성상 강제성이 확보되지 아니한다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프랜차이즈 관련법제도의 정비에 정부와 업계가 공감대를 같이 하고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것이다.

필자와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정긍식 박사는 1994년에 서울특별시 소재의 22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실태 · 관행을 조사한 바 있다. 이 조사는 당시 프랜차이즈의 성장추세를 보면서, 프랜차이즈라는 거래형태가 우리 사회 · 경제에서 순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주를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평등한 거래당사자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시각에서 실시한 것이다. 최근의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나 자체조사결과에서도 보듯이 프랜차이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당사자 지위의 불평등성에 기인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인데, 당시에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의나 프랜차이즈의

특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거의 없었고 또 지금과 같이 고시나 표준약관도 마련되어 있지도 아니했던 만큼 불공정거래관행이 더욱 횡행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프랜차이즈라는 거래형태를 우리의 사회 · 경제에 건전하고 발전적인 제도로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가맹점주에 대한 후견적 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제도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그 입법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프랜차이즈의 실태와 관행을 조사한 것이다. 2001년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계획을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칭 「가맹사업법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제정을 주요 업무계획으로 상정하고 있고, 표준약관의 적용대상업종도 확대할 방침이라 한다. 1999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56개 외식업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가맹계약서를 직권심사한 것 이외에는 1994년 조사 이후 프랜차이즈의 실태와 관행에 대한 별다른 조사가 없었던 관계로,[3] 이하에서는 당시의 조사내용을 재조명하면서 향후 프랜차이즈 관련법제도의 정비와 관련한 몇 가지 고려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II. 프랜차이즈의 실태 및 관행[4]

1. 조사의 개요

(1) 조사방법

조사는 1994년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서울특별시 소재 가맹점 220개(외식업 101개, 소매업 99개, 서비스업 20개)를 대상으로 행해졌다. 220개의 표본은 최소 200개의 유효표본을 확보한다는 목표하에 10%의 가중치를 둔 결과이고, 구체적인 조사대상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시 관련통계자료가 미비했던 관계로 대략적인 업종분포만을 고려하였다. 조사는 대학재학생인 조사원들의 입회하에 응답자가 직접 질문지에 기입하는 자기기입방식을 이용하였으며, 조사 후 현장에서 즉시 수거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2)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프랜차이즈 관계에서 쟁점이 되고 있거나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당시 입수 가능했던 정부자료 기타 관련자료 및 주요 일간지 · 경제신문(1990년 1월~1994년 6월)을 중심으로 하여 프랜차이즈 업계의 현황과 프랜차이즈의 실태 및 분쟁사례 등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10여종의 가맹계약서를 검토하고 프랜차이즈 법률관계의 내용 일반을 파악하여 앞서 선별한 쟁점사항과 실제적 법률관계의 상호관계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선별한 쟁점사항은 프랜차이즈 법률관계의 시간적 진행순서에 따라 설문지에 유기적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크게 ① 계약체결, ② 계약내용, ③ 계약기간 및 계약의 종료, ④ 분쟁, ⑤ 기타의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끝으로 '입법이나 정책수립과 관련한 제안 또는 건의' 등을 개방형으로 묻고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1999년도에 56개 외식업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가맹계약서를 직권으로 심사하여 '가맹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조항', '부자재의 구입을 강제하는 조항', '설비업체를 지정하는 조항' 등 22개 약관조항에 대해 「약관규제에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해당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토록 하는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4) 이하의 내용은 1994년에 서울특별시 소재 22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프랜차이즈 실태 · 관행 조사'의 결과를 요약 · 정리한 것이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최성근 · 정긍식, 프랜차이즈 관행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4. 12.' 참조.

① 계약의 체결 : 가맹점영업 시작 동기(1문), 가맹본부의 선택 이유(2문), 가맹본부의 신용도 조사(3문), 계약서의 전문가 검토 의뢰(4문), 계약체결전 계약서의 검토(5문), 가맹본부의 계약서 명시 및 설명의무의 이행여부(6문), 계약관계 전반에 대한 만족도(7문), 계약서의 수정여부 및 수정내용(8문)

② 계약의 내용 : 가맹본부의 지원1 ; 교육 여부 · 내용 · 만족도(9문), 가맹본부의 지원2 ; 매장운영과 판매지원의 여부 · 만족도 및 만족 · 불만족내용(10문), 실내장식 기타 설비 등의 시공방법과 만족도(11문), 실내장식 기타 설비 등의 관리와 만족도 및 부실관리에 대한 책임(12문), 공급물품의 품질 및 가격에 대한 만족도(13문), 공급물품의 판매가격 결정(14문), 공급물품의 하자발생시 처리(15문), 결제조건에 대한 만족도와 불이행에 대한 제재(16문), 독점적 영업권의 인정여부 및 만족도(17문), 로얄티의 액수 및 수준(18문), 가맹비 · 보증금 · 초도상품비에 대한 만족도(19문),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20문), 가맹본부의 면책조항 또는 일방적 해석조항의 존재여부(21문)

③ 계약기간 및 종료 : 계약기간의 적정성(22문), 계약갱신여부(23문), 계약해지의 가능여부(24문), 계약해지조건(25문), 점포의 선정(26문), 점포의 양도가능여부(27문), 점포에 대한 권리금 유무(28문), 예상했던 매출액과 현재 매출액의 비교(29문), 영업상의 애로사항(30문)

④ 분쟁 : 분쟁경험의 유무 및 분쟁대상(31문), 분쟁해결의 방법(32문)

⑤ 기타 : 고객에 대한 책임(33문), 가맹점부담의 소비자전가여부(34문), 가맹본부의 파산가능성(35문), 영업의 계속여부(36문), 가맹본부단체의 필요성(37문), 가맹점주단체의 필요성여부(38문), 관련법제도의 규율수준 및 제도정비시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39문), 외국 가맹본부의 가맹점 운영의사와 그 이유(40문)

2. 프랜차이즈 실태 및 관행의 조사결과분석 요약

(1) 계약체결

먼저 가맹점영업을 하게 된 동기를 보면, 자영업의 선호경향과 영업관리의 효율성 · 편의성 추구 및 가맹점 영업형태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공감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가맹점주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 본부의 신용도를 조사하는 가맹점주는 약 9%, 전문가에게 계약서의 검토를 의뢰하는 비율은 약 6%, 가맹본부가 계약내용을 성실하게 설명하는 비율은 약 25%이다. 그리고 가맹점주의 요구로 계약서를 수정하는 비율은 17.7%이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가맹점주가 되고자 하는 자들이 가맹본부의 신용도나 계약서를 상세히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본부도 주요사항에 대한 공시 또는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가맹점주의 이익을 해침은 물론 분쟁의 다발성으로 이어진다. 상대적으로 상세하게 본부의 신용도 및 계약서를 검토하였거나 본부가 충실한 설명을 한 경우에는 계약서를 수정하여 계약상의 불이익을 시정할 기회를 가졌음을 볼 수 있었다. 또 계약관계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가맹점주의 약 59%가 현재의 계약관계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나 계약관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2) 계약내용

계약의 내용은 크게 가맹점영업의 기본적 비용, 교육지원 · 매장운영지원 · 판매지원 등의 본부의 지원, 실내장식 기타 설비의 관리, 계속적 물품공급, 독점적 영업권, 로얄티 및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특히 이 중 본부의 지원은 본부의 영업에 대한 통제와 함께 프랜차이즈를 여타의 거래형태와 구별 지우는 독특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가맹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부분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본부의 지원이 있는 경우는 약 55%(교육지원 61.8%, 매장운영지원 54.5%, 판매지원 49.5%)에 불과했고, 본부의 지원이 있는 경우에도 그 만족도가 약 32.5%(교육지원 38.2%, 매장운영지원 28.7%, 판매지원 30.5%)로 낮은 편이었다. 또한 독점적 영업권의 경우를 보면, 프랜차이즈의 본질상 가맹점주가 일정지역에 대한 독점적 영업권을 갖는 것은 가맹비, 로얄티 등 대가의 지급에 비추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가맹계약상 독점적 영업권을 부여받고 있는 경우는 약 54%에 불과했다.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는 가맹점주의 약 72%가 가맹본부에게 유리하도록 되어 있다고 여기고 있다. 가맹계약의 내용에 「약관규제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면책조항 또는 일방적 해석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도 약 37%에 달했다.

(3) 계약기간 및 계약의 종료

계약기간 및 종료를 보면, 프랜차이즈가 정착되어 있는 제 외국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투하자금의 회수를 고려하여 통상 5년~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1년 내지 2년이 약 40%, 계약기간을 약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약 45%로 단기 또는 부정기의 계약기간이 대부분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의 갱신여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가맹점주의 의사에 의해서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36.4%로 절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계약의 해지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경우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고 위약금 없이 해약이 가능한 경우는 전체의 33.6%에 불과했다. 한편 점포의 선정에 관하여는 본부가 직 · 간접으로 관여하는 비율이 약 40%이다. 영업의 양도와 관련하여 가맹점주의 약 55%만이 자유롭게 가맹점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그리고 영업양도시 권리금 수수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관여하는 비율이 약 11%인데, 이는 가맹점영업을 둘러싸고 권리금에 대한 새로운 관행이 형성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운영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본부의 지원 미비, 설비의 유지 · 관리 부실, 본부 · 경쟁업체의 과다출점 등의 순서로 애로사항을 지적하였다.

(4) 분쟁

본부와의 분쟁을 보면, 가맹점주의 약 51%가 분쟁경험이 있으며 빈도수는 본부의 지원, 설비의 시공, 설비의 유지 · 관리, 물품공급하자 발생시의 처리 순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법원이나 중재기관 등을 통한 공적 해결을 선호하는 비율은 약 17%에 불과하고 본부와의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선호하는 비율이 약 60%에 달하였는데, 이는 가맹점주의 교섭력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분쟁해결방법이라 할 수 없다.

(5) 기타

그밖의 문제들로 소비자보호, 본부가 부담을 전가하는 경우에 대한 가맹점주의 대응, 본부의 파산에 대한 대비, 영업의 계속여부, 시장개방에

의 대응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 중 본부가 파산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주가 보증금의 반환불능 · 투자자본의 회수 불가 · 신용도의 저하 등 상당한 경제적 · 사회적 손실을 입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대비책을 마련해 둔 경우는 약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이 개방되는 경우에는 38.6%가 경영기법, 상호 · 상표 등의 지명도, 고객의 생활 · 취향의 변화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외국기업인 가맹점을 운영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본부협회 등 자율적 규제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이에 수긍하고 있는데, 특히 가맹본부단체(61.8%)보다 가맹점주단체(84.1%)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맹점주가 많았던 것은 현행법제도상 가맹점주에 대한 보호가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법령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관계를 적절하게 규율하고 있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약 61%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프랜차이즈 관련법제도를 정비하는 경우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으로는 본부의 면책조항 또는 일방적 해석조항에 대한 규제, 본부의 파산 등에 대한 대비책, 본부의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본부가 중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계약기간 및 갱신의 보장, 본부의 자격요건 규제 등을 꼽았다.

Ⅲ.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관행의 개선방향

1980년대 후반 이후로 가맹점주의 보호 및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관련업계와 정부부처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왔다. 물론 그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의불공정거래행위의 기준」고시(1997. 2.)를 제정하고 「프랜차이즈(외식업)표준약관」을 도입(2001. 2.)하는 등 제도정비의 움직임이 있기는 했지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불평등계약이라는 프랜차이즈의 본질상 가맹점주의 보호 내지는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고시의 제정이나 업계의 자율에 맡기는 정도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에 가칭「가맹사업법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을 제정한다는 발표는 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고려사항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프랜차이즈 관련법제도를 정비함에 있어서는 먼저 목적을 명확히 하고, 다음으로 규제의 내용과 법규형식 및 규제방식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규제의 목적은 프랜차이즈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평등당사자인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규제의 내용에 있어서는, 먼저 프랜차이즈 관계는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우월적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고 통제에 따를 의무를 감수해야 하는 불평등당사자 간의 관계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가맹계약의 내용은 개개의 경우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되겠지만, 가맹계약은 기본적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의 교섭력의 차이로 인하여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계약이 되지 않도록 규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가맹본부와 제3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가맹본부가 궁극적으로 가맹점 영업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한다는 점에서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자

유로운 것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합당치 아니하다. 그러므로 가맹본부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프랜차이즈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현행 법규로는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들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폐해규제를 원칙으로 하므로 구체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사업자의 일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프랜차이즈 관계를 규율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약관규제법은 특정 약관조항의 유·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이와 관련한 시정조치를 정하고는 있지만, 제시하고 있는 기준이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프랜차이즈 관계를 적절하게 규율하기는 어렵다. 또한 계약체결시 당사자가 서로 타협하여 수정한 개별약정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상표법은 상표의 등록이라고 하는 절차적 수단을 통하여 상표등록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고,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호·상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로, 상호·상표 등 영업을 나타내는 표지의 사용허락 및 노하우의 제공과 관련한 가맹본부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뿐이다. 따라서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거래형태의 특성, 외식업·판매업·서비스업 등 관련업종의 다양성, 현재의 성장규모 등을 고려해 볼 때, 현행법규에 관련규정을 삽입하는 방식보다는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거래를 총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본다.

규제의 방식에 있어서는 자율적 규제의 기반이 없는 우리의 경우 초기에는 공적 규제가 중심이 될 수 밖에 없겠지만, 긴 안목에서는 업계의 경쟁력강화 측면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주협회 등에 의한 자율적 규제의 비중을 높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 공정